‘26. 10.

김제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건 설 과

김제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2026-103

제출연월일 : 2026. 10. .
제 출 자 : 김 제 시 장

1. 제정이유

○ 「도로법」 제52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는 경우의 허가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도로 구조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원활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 (안 제1조 ~ 제2조)
○ 조례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 (안 제3조)
○ 연결허가에 관한 사항 ---------- (안 제4조 ~ 제6조)
○ 도로 포장, 변속차로, 부가차로에 관한 사항 ------ (안 제7조 ~ 제9조)
○ 배수시설, 분리대, 길어깨에 관한 사항 ---------- (안 제10조 ~ 제12조)
○ 부대시설, 공사의 우선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 제14조)

3. 참고사항

가. 방침 결재 여부 : 여
나. 규제심사 대상 여부 : 여
다. 예산수반 여부 : 부
라. 성별영향평가 대상 여부 : 여

마. 자치법규 검토(부서의견조회) 대상 여부 : 여

바.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대상 여부 : 여

사.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부

아. 입법예고기간 : 2026. 8. 21. ~ 9. 10.(20일간)

4. 따로 붙임

가. 조례안

나. 규제심사 결과 : **비중요규제**

다.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 **원안 동의**

라. 자치법규 검토결과 : **이견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이견 없음**

바.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 **원안가결**

사. 관련 법령 발췌서

- 「도로법」 제2조, 제23조, 제52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49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조, 제85조
-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
-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 제3조

아. 참고자료

- 김제시 필수 자치법규 미마련 현황(규제 분야)
- 전북자치도 내 타 시·군 조례 제정 현황
- 전북자치도 내 타 시·군 조례(남원시)

자. 방침결정문

김제시 조례 제 호

김제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52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려는 경우의 허가기준, 허가절차, 설치기준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 도로 구조를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속차로”란 자동차를 가속시키거나 감속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차로를 말한다.
2. “테이퍼”란 주행하는 자동차의 차로 변경을 원활하게 유도하기 위하여 차로가 분리되는 구간이나 차로가 접속되는 구간에 설치하는 삼각형 모양의 차도 부분을 말한다.
3. “부대시설”이란 주행하는 자동차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에 설치하는 방호울타리, 낙석방지시설, 사설안내표지, 노면표시 및 분리대 등을 말한다.
4. “부가차로”란 변속차로로 연결되는 사업부지 사이에 설치하는 차로를 말한다.
5. “교차로”란 세갈래교차로, 네갈래교차로, 회전교차로, 입체교차로 등 둘 이상의 도로가 교차 또는 접속되는 공간을 말한다.
6. “연결로”란 입체교차하는 도로에서 서로 교차하는 도로를 연결하거나 서로 높이 차이가 있는 도로를 연결해 주는 도로를 말한다.
7. “측도(側道)”란 자동차가 도로 주변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본선 차도에

병행하여 설치하는 도로를 말한다.

8. “교통섬”이란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처리나 보행자 도로횡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차로 또는 차도의 분기점 등에 설치하는 섬 모양의 시설을 말한다.

9. “길어깨”란 도로를 보호하고 비상시에 이용하기 위하여 차도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0. “연석(緣石)”이란 보도 등과 차도의 경계선에 연접하여 설치하는 경계석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2항에 따라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일반국도·지방도의 우측으로 진입 또는 진출할 수 있도록 다른 도로·통로, 그 밖의 시설(이하 "다른 시설"이라 한다)을 도로의 우측에 연결(교차에 따른 연결을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도시계획구역 안의 도로와 동지역 안의 도로는 적용하지 아니하되, 교통사고가 현저히 우려되는 도로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현지 여건에 맞도록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결하는 경우 외에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연결 허가의 신청은 제4조에 따른다.

제4조(연결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시설을 연결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1. 연결계획서

2. 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이하 "변속차로 등"이라 한다)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한다)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 된다)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연결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개요(목적, 규모, 기간 및 투자계획과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수요분석 등을 포함한다)

2. 변속차로 등의 설치계획

3. 부대시설의 설치계획

4. 연결공사 중의 안전관리대책 및 교통관리대책

5. 도로 연결의 목적이 되는 시설물의 법정주차 대수(시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변속차로 등의 설계도면의 작성은 별표 1 및 별표 2에서 정하는 요령과 설치방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⑤ 도로에 다른 시설을 연결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연결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시장에게 연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도로의 구간이 제6조에 따른 연결허가 금지구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연결 허가를 신청한 자가 연결 허가를 받은 후 연결허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변경내용 관계 도서를 붙여야 한다)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도시지역 등에서의 연결허가 기준) ① 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하 “도시지역”이라 한다)에서 도로에 다른 시설을 연결하려는 경우로서 도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에 적합하도록 허가(제4조제6항에 따른 연장허가 및 변경 허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해당 도로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이하 “도시·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정비되어 있는 경우
2.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신청일에 해당 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1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

② 시장은 시공 중인 도로에 다른 시설을 연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 공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그 연결허가구간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신청구간 도로시설물 현황조서(도로시설물의 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산출 근거자료와 시공물량 사진을 첨부한다)를 작성하고 설계를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연결허가의 금지구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의 구간에는 다른 시설의 연결을 허가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제2호·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도시지역 안에 있는 도로로서 제5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곡선반지름이 280미터(2차로 도로의 경우에는 140미터) 미만인 경우 곡선구간의 안쪽 차로의 중심선에서 장애물까지의 거리가 별표 3에서 정하는 최소거리 이상이 되지 아니하여 시거(視距)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의 안쪽 곡선구간
2. 종단기울기가 평지는 6퍼센트, 산지는 9퍼센트를 초과하는 구간. 다만, 오르막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오르막차로의 바깥쪽 구간에 대하여는 연결 허가를 할 수 있다.
3. 도로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연결하는 교차로에 대하여 별표 4에 따른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 산정기준에서 정한 금지구간 이내의 구간. 다만, 해당 도로가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5가구 이하의 주택과 농어촌 소규모 시설(「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을 말한다)의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제한거리를 금지구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나.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면도 중 2차로 이상으로 설치된 면도

 다. 2차로 이상이며 그 차도의 폭이 6미터 이상이 되는 도로

 라. 관할 경찰서장 등 교통안전 관련 기관의 의견조회 결과, 도로 연결로

인하여 교통의 안전과 소통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것으로 인정되는 도로

4. 터널 및 지하차도 등 시설물의 내부와 외부 간 명암 차이로 인해 장애물 확인이 어려워 조명시설 등을 설치한 구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간

가. 설계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이하인 도로 : 해당 시설물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구간

나. 설계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도로 : 해당 시설물로부터 350미터 이내의 구간

5. 교량 등의 시설물과 근접되어 변속차로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

6. 버스정차대·측도 등 주민 편의시설의 이전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주민 통행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구간

제7조(변속차로 등의 포장 등) ① 변속차로 등은 접속되는 도로부분을 수직으로 잘라낸 부분에 그 도로의 포장과 동일한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두께 및 재료로 포장하여야 한다.

② 변속차로 등은 노면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그 횡단기울기가 접속되는 도로와 같거나 그 도로보다 완만하게 포장하여야 한다.

제8조(변속차로) 변속차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길이는 별표 5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할 것

2. 폭은 3.25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자동차의 진입과 진출을 원활하게 유도할 수 있도록 노면표시를 할 것

4. 사업부지에 접하는 변속차로의 접속부는 곡선반지름 12미터 이상의

곡선으로 처리할 것.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곡선반지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5. 성토부 또는 절토부 등 비탈면의 기울기는 접속되는 도로와 같거나 그 도로보다 완만하게 설치할 것

제9조(부가차로) 부가차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길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500미터 이하로 할 것
2. 폭은 3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사업부지와 부가차로의 접속부는 곡선반지름이 12미터 이상인 곡선으로 처리할 것.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곡선반지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0조(배수시설) 배수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노면의 빗물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길어깨의 바깥쪽에 연석을 설치할 것
2. 기존의 배수체계에 지장이 없도록 연결할 것
3. 접속되는 도로의 배수시설이 변속차로 등의 설치로 인하여 매립될 경우에는 기존의 배수관보다 큰 규격의 배수관을 설치하여 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U형 측구(側溝) 등 배수시설이 이미 정비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같은 단면의 배수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배수시설에 퇴적되는 토사 등을 쉽게 제거하기 위하여 20미터 이내의 일정한 간격으로 뚜껑이 있는 맨홀을 설치할 것
4. 변속차로 등으로 연결되는 시설물의 더러운 물 또는 빗물이 접속되는 도로로 흘러가지 않도록 배수시설을 별도로 설치할 것. 다만, 배수시설은 격자형 철제 뚜껑이 있는 유효 폭 30센티미터 이상, 유효 깊이 60센티미터

이상의 U형 콘크리트 측구로 하여야 한다.

제11조(분리대) 분리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변속차로의 진·출입부를 제외한 사업부지의 앞면 등에는 자동차의 무질서한 진출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접속되는 도로의 길어깨 바깥쪽에 분리대를 설치할 것
2. 분리대는 화단, 방호울타리, 교통섬(별표 2의 제3호가목 및 제4호가목에 따라 변속차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공작물로 설치하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변속차로의 진입부에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할 것
3. 분리대는 높이 0.3미터(교통섬은 0.12미터) 이상으로 설치하되, 시거장애가 없도록 할 것
4. 분리대를 화단으로 설치할 경우 그 폭은 1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분리대 노면에 빗물 등이 고이지 않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변속차로 등의 배수시설과는 별도로 폭 0.3미터 이상의 격자형 철제 뚜껑이 있는 U형 콘크리트 측구를 설치할 것
5. 야간에 운전자가 분리대를 알아볼 수 있도록 분리대에 빛을 강하게 반사할 수 있는 반사지를 붙이거나 시선유도표지 등을 설치할 것
6. 기존에 설치된 변속차로와 연결하여 다른 시설의 변속차로를 추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연결된 시설을 통합된 하나의 시설로 보아 그것에 적합한 연속된 분리대를 설치할 것

제12조(변속차로 등의 길어깨) 길어깨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변속차로의 길어깨는 접속되는 도로의 길어깨와 같은 구조로 폭 1미터 이상으로 설치할 것. 다만, 길어깨가 보도를 겸용하는 경우에는 보도의 폭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
2. 변속차로 등의 노면이 변속차로 등으로 연결되는 시설물의 주차공간으로 잠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길어깨 바깥쪽에 연석, 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할 것
3. 변속차로의 길어깨에는 폭 0.25미터 이상의 측대를 설치할 것
4. 변속차로의 길어깨 바깥쪽에는 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할 수 있는 보호 길어깨를 확보할 것

제13조(부대시설) 변속차로 등의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방호울타리 또는 낙석 방지시설 등의 안전시설은 현지의 여건이나 비탈면의 지형 조건에 맞게 설치할 것
2. 변속차로 등의 노면표시는 접속되는 도로와 같은 규격으로 하고 분리대가 설치되지 않은 부분 등에는 안전지대 표시를 할 것

제14조(공사의 우선시행) 해당 변속차로 등을 제외하고 차량의 진출입로가 없는 경우에는 공사 시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사용 차량의 안전한 진출입을 위하여 모든 시설공사 중에서 변속차로 등의 공사를 먼저 시행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로 등의 연결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이미 도로 등의 연결허가를 받은 시설 또는 사람은 이 조례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 1]

변속차로 등의 설계도면 작성요령(제4조제4항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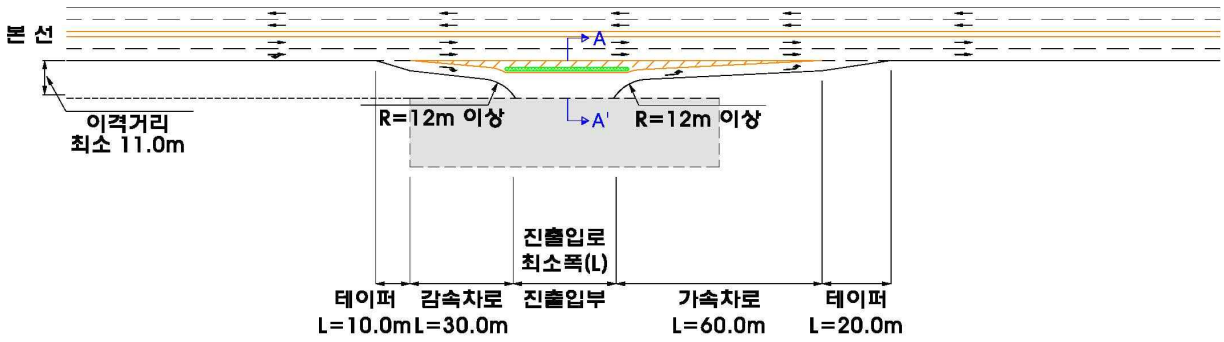
도 면 명	작 성 요 령
위 치 도	1/50,000(또는 1/25,000) 축척의 지형도에 연결 시설물의 위치 표시
평 면 도	연결부 주변의 지형·지물을 1/1,200 이상 축척으로 작성. 다만, 도로대장 또는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 기본계획에 따라 제작된 기본도(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기 위해 점용면적 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연속지적도)가 있는 경우에는 이와 연계하여 작성(접속되는 도로의 중앙선, 포장 끝선, 길어깨선, 도로점용지 경계선, 도로부지 경계선, 접도구역선,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제3항에 따른 도류화시설(導流化施設: 도로의 흐름을 원활하게 유도하는 시설), 테이퍼, 부가차로, 배수시설, 분리대, 그 밖의 시설물의 위치 등을 표시)
종 단 면 도	세로 방향 1/1,200 이상, 가로 방향 1/100 이상 축척으로 작성 [측점(測點)은 20미터 간격으로 하되, 땅의 표면 높이가 급격히 변하는 지점을 추가 측점으로 설치]
횡 단 면 도	측점마다 1/100 이상 축척으로 작성(배수시설, 분리대, 도로의 중심선, 도로부지 및 접도구역의 경계선 등을 표시. 횡단면의 범위는 시공계획 폭 양쪽으로 연결 시설물의 영향이 미치는 부분까지 포함)
구 조 물 도	각종 구조물의 규격과 위치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정확한 치수로 표시하여 작성
부 대 공 사 도	변속차로 등과 관련하여 설치되는 부대시설(방호시설, 노면표시 등)에 대한 상세도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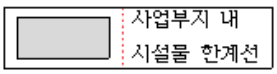
■[별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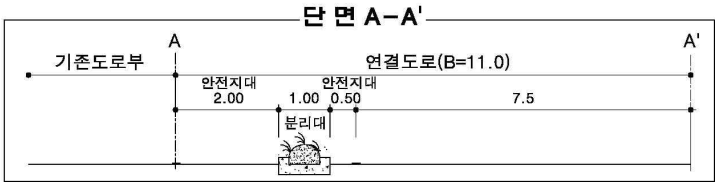
변속차로 등의 설치방법(제4조제4항 관련)

1. 직접식 변속차로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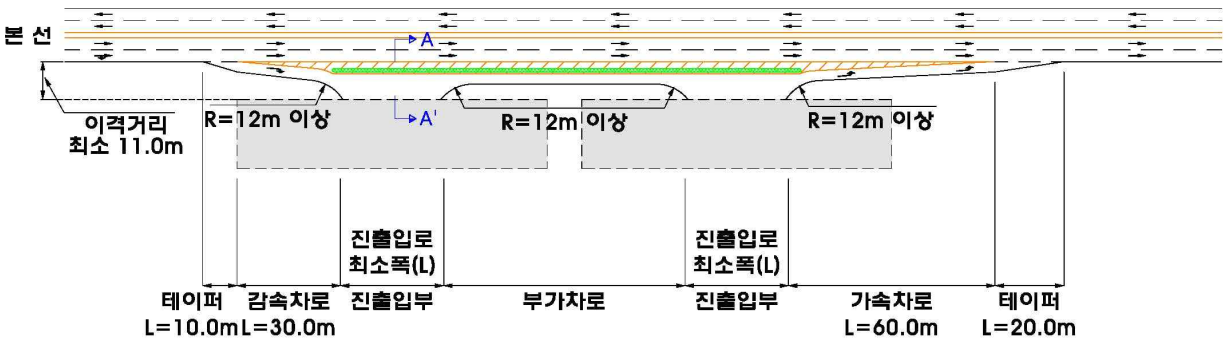
가. 1개소 연결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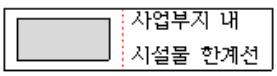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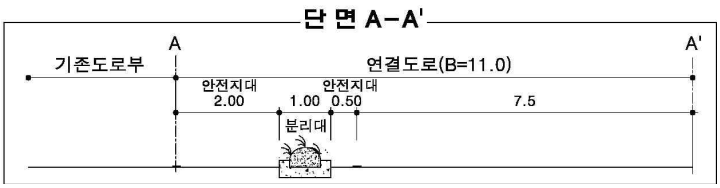




나. 2개소 이상 연결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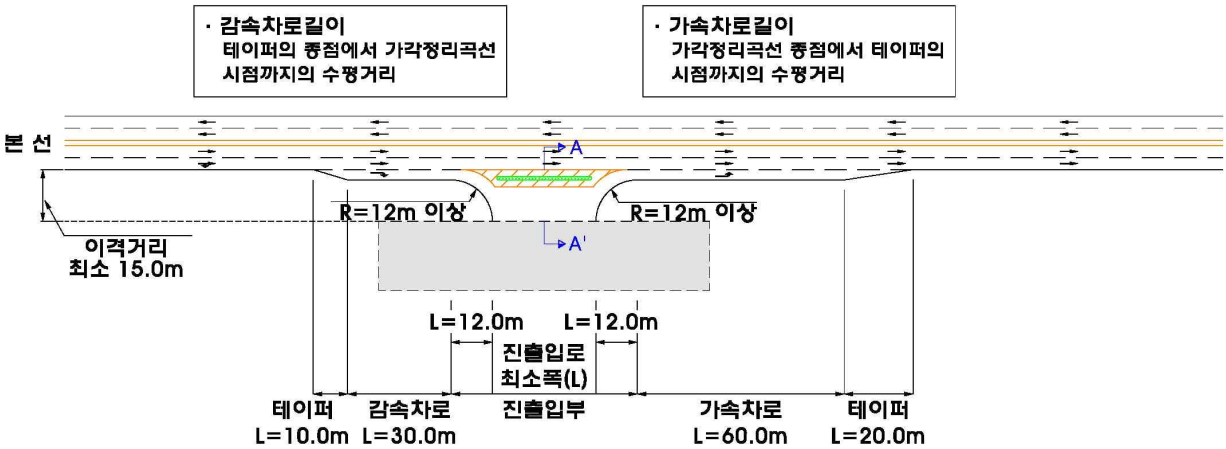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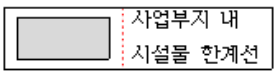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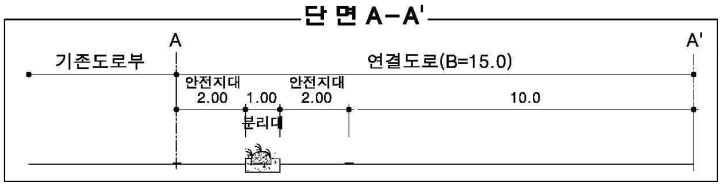


2. 평행식 변속차로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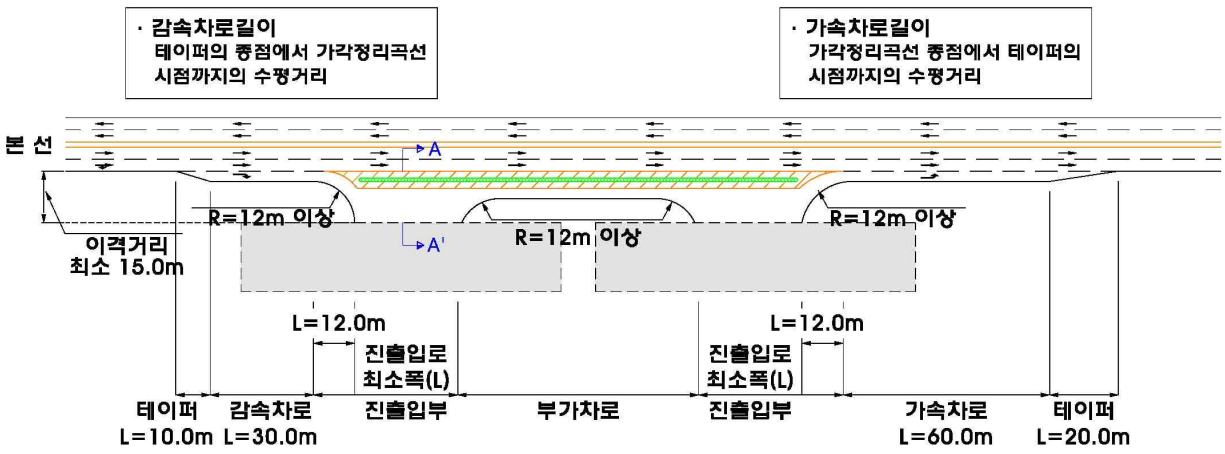
가. 1개소 연결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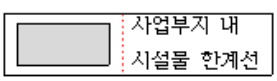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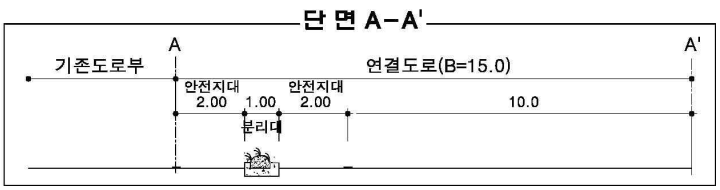




나. 2개소 이상 연결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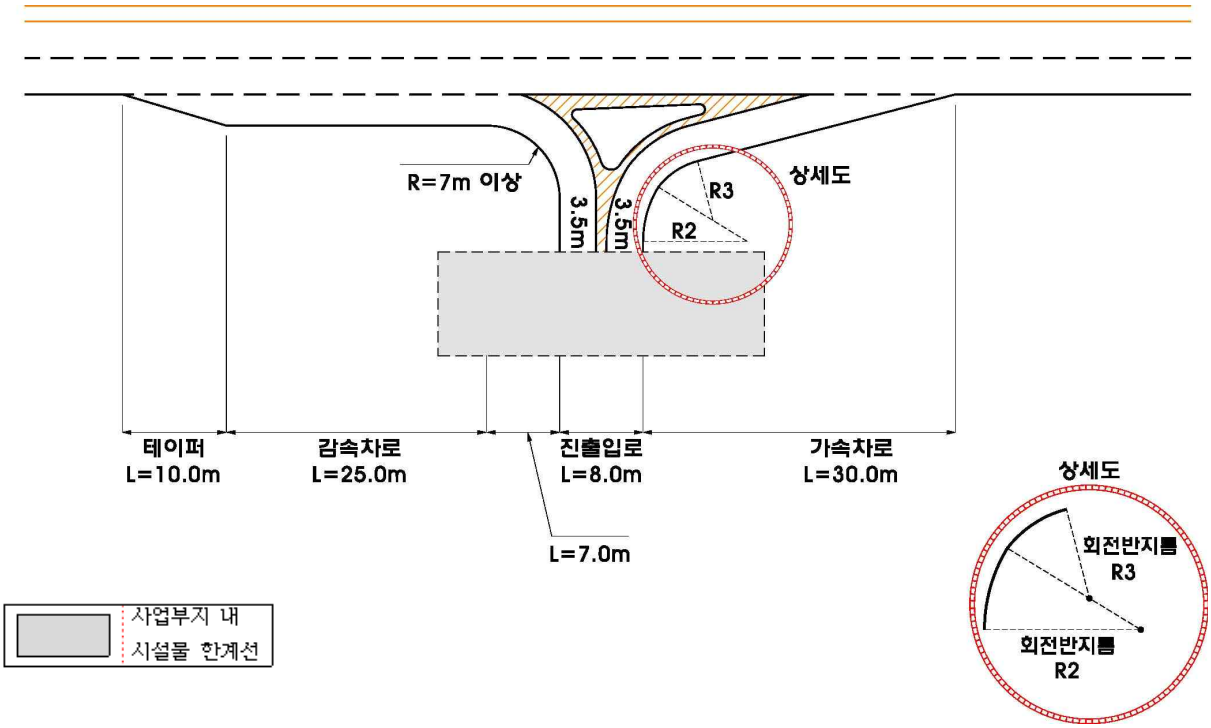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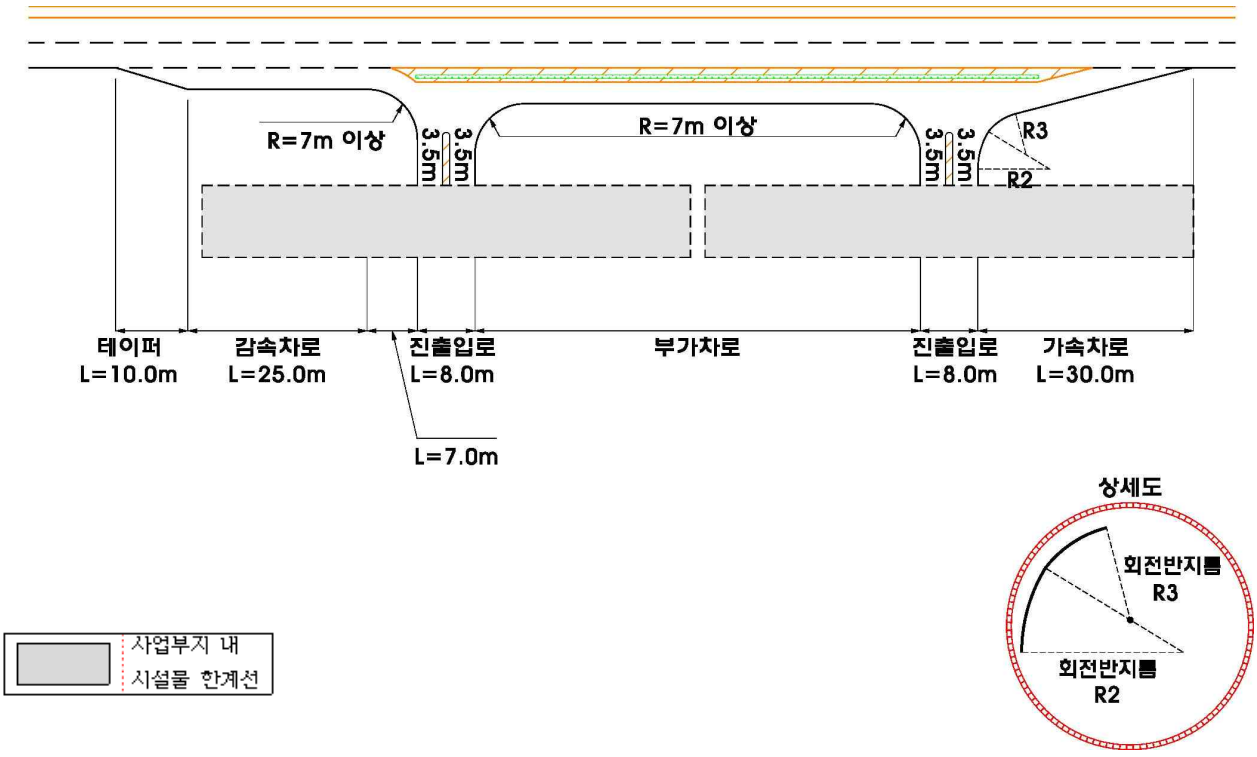


3. 평행식 감속차로와 직접식 가속차로 설치

가. 1개소 연결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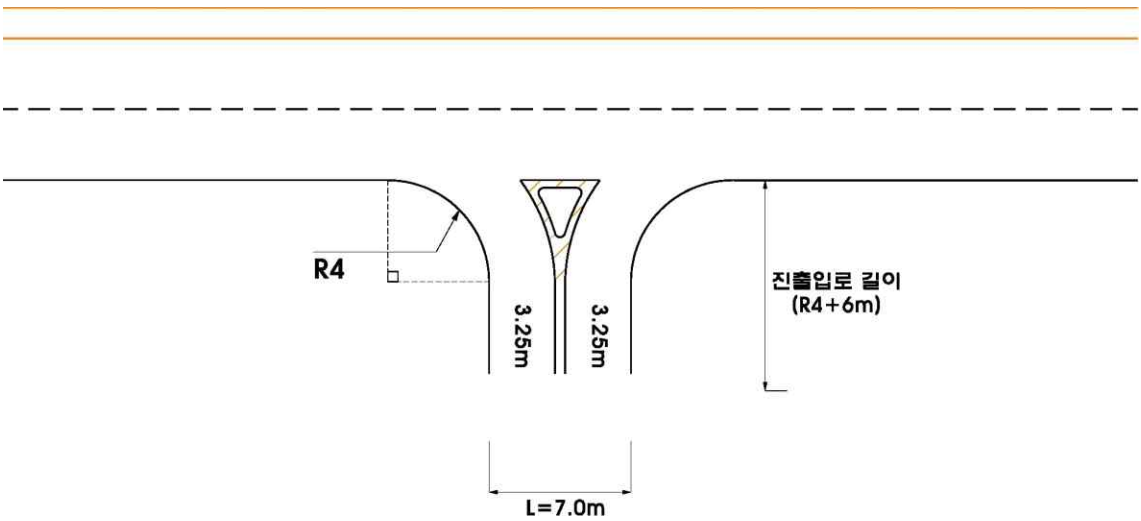


나. 2개소 이상 연결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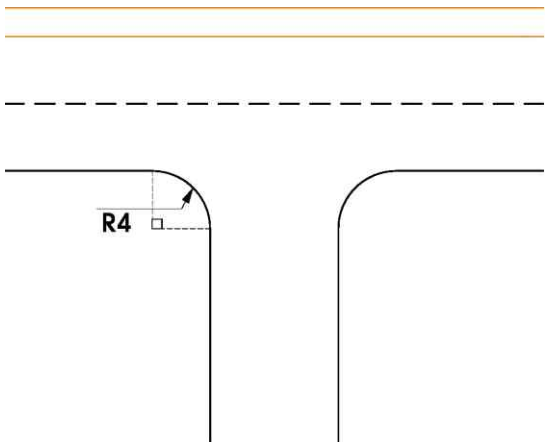


4. 도로의 모서리곡선화를 통한 변속차로 대체(代替) 설치

가. 곡선 반지름(R_4) 5미터 이상인 경우



나. 곡선 반지름(R_4) 3미터 이하인 경우



비고

1. 위 표 중 R은 곡선반지름, L은 길이를 말하며 그 단위는 미터(m)로 한다.
2. 사업부지와 변속차로 등의 연결지점은 부지경계선 중 차량의 원활한 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부지의 상황을 고려하여 정한다.
3. 위 표 중 이격거리는 본선 차도(길어깨를 제외한다)의 바깥쪽 차선과 사업부지 내 건축한계선 등 본선 차량 통행의 시야 확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시설물 간의 최소 거리를 말한다.
4. 위 표 중 제1호와 제2호에서 진출입로 최소 폭(L)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소 20m로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최소 10m로 한다.

가. 별표 5 제1호가목의 시설란 중 1), 2), 5), 6)(주차대수 51대 이상), 7)(주차대

수 51대 이상), 8)(101가구 이상)

나. 별표 5 제2호가목의 시설란 중 1), 2), 5), 6)(주차대수 31대 이상), 7)(주차대수 51대 이상), 8)(101가구 이상)

5. 위 표 중 제3호가목과 제4호가목은 분리대를 교통섬의 형태로 설치할 수 있다.

6. 위 표 중 제3호에서 곡선 반지름 R_2, R_3의 크기는 가속차로의 길이에 따라 결정되며 그 최소 길이는 다음 표와 같다.

가속차로의 길이(미터)	R_2(미터)	R_3(미터)
30	10	7
25	7	5
20	7	5

■[별표 3]

곡선구간의 곡선반지름 및 장애물까지의 최소거리(제6조제1호 관련)

(단위 : 미터)

구 분	4차로 이상				2차로		
곡선반경	260	240	220	200	120	100	80
최소거리	7.5	8	8.5	9	7	8	9

※ 비 고 : 최소거리는 곡선구간의 안쪽 차로 중심선에서 장애물까지의 최소거리를 말한다.

■[별표 4]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 산정 기준(제6조제3호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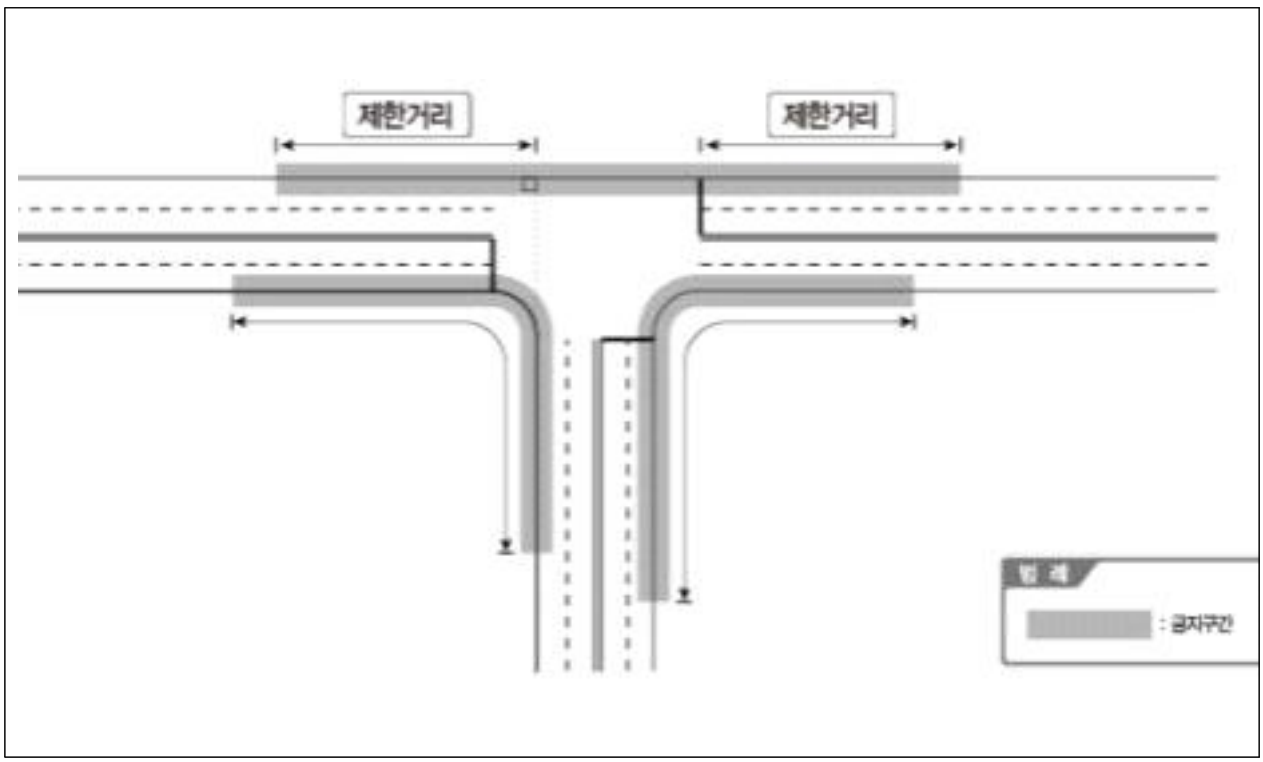
1. 변속차로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설치계획이 없는 평면교차로의 연결 금지구간의 산정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연결 금지구간은 도로가 교차하는 물리적인 영역과 제한거리로 한다.

나. 제한거리는 감속차선의 경우 차량의 정지선에서부터 산정하고, 가속차선의 경우 교차하는 도로의 연장선과 만나는 지점에서부터 산정하며, 최소길이는 다음 표와 같다.

설계속도 (킬로미터/시간)	제한거리의 최소길이(미터)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	그 밖의 지역
50	25	40
60	40	60
70	60	85
80	70	100

<예시도> 변속차로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설치계획이 없는 평면교차로의 연결 금지구간



2. 변속차로가 설치되었거나 설치예정인 평면교차로의 연결 금지구간의 산정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연결 금지구간은 본선 또는 교차도로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는 감속차로 테이퍼의 시작점부터 교차로를 지나 교차도로 또는 본선에 진입하는 가속차로 테이퍼의 종점까지의 범위와 제한거리로 한다.

나. 제한거리는 본선 또는 교차도로의 가속·감속차로 전방·후방에서부터 산정하며 최소길이는 다음 표와 같다.

구분	지구단위계획구역,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	그 밖의 지역
제한거리의 최소길이(미터)	10	20

다.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라. 5가구 이하의 주택과 농어촌 소규모 시설(「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을 말한다)의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한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예시도> 변속차로가 설치되었거나 설치예정인 평면교차로의 연결 금지구간

3. 입체교차로에서의 연결 금지구간의 산정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연결 금지구간은 본선 또는 교차도로에서 입체교차로로 진입하는 감속차로 테이퍼의 시작점부터 연결로를 지나 교차도로 또는 본선의 가속차로 테이퍼의 종점까지의 범위와 제한거리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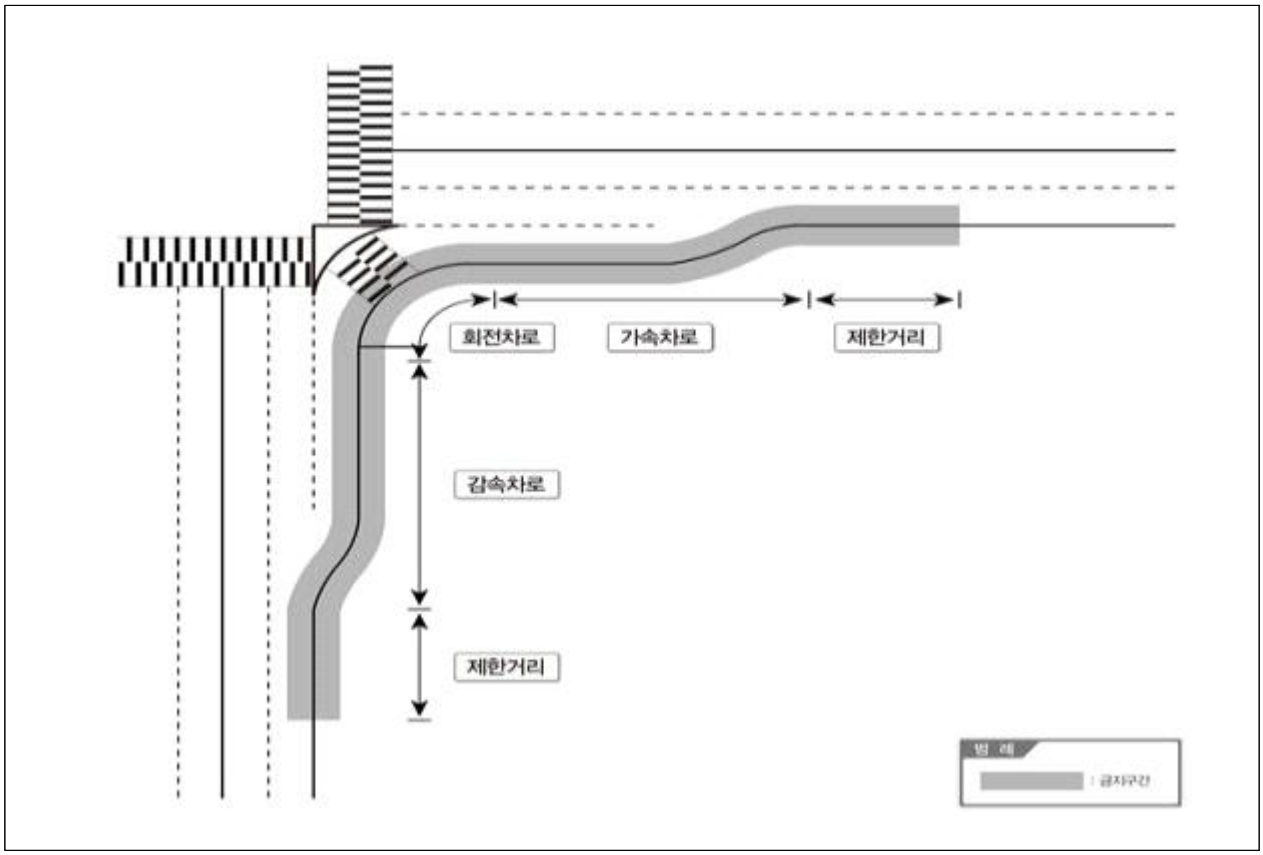
나. 제한거리는 연결로가 접속된 본선 또는 교차도로의 연결로 접속부 전방·후방에서부터 산정하며 최소길이는 다음 표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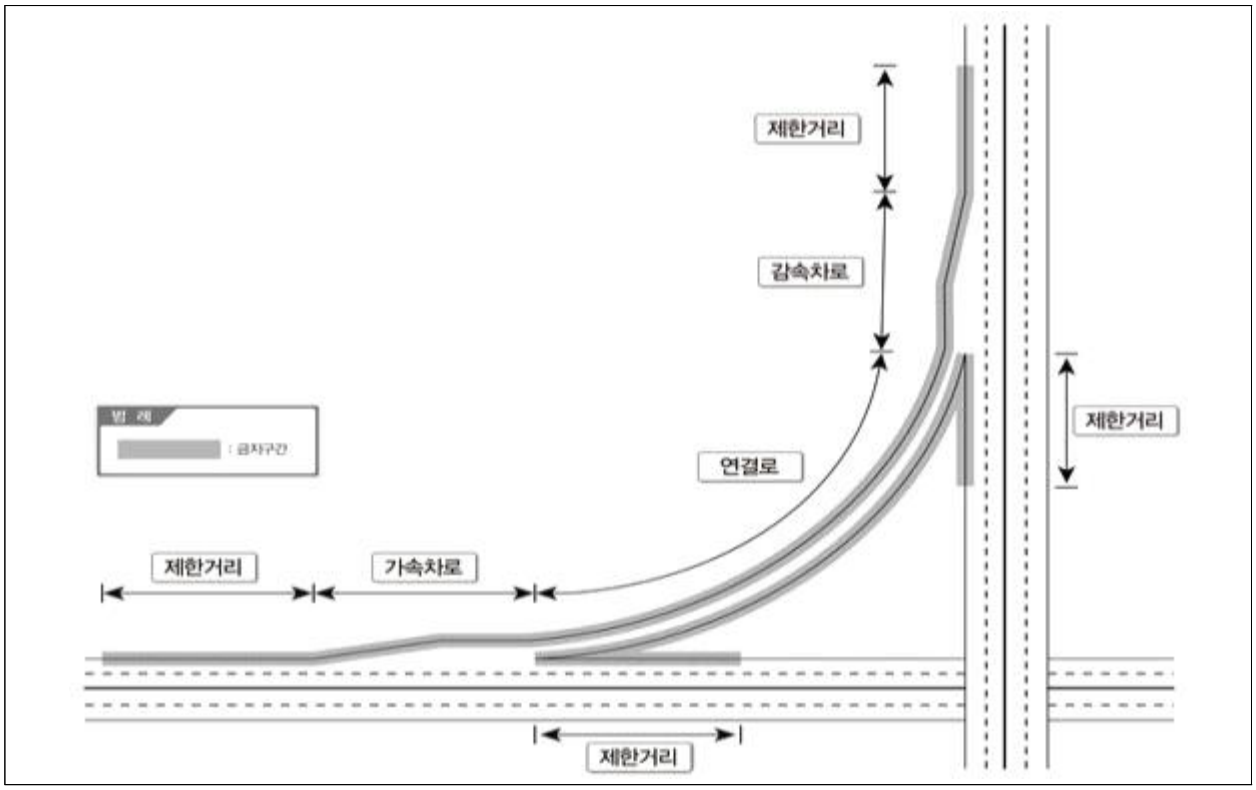
구분	4차로 이상	2차로
제한거리의 최소길이(미터)	60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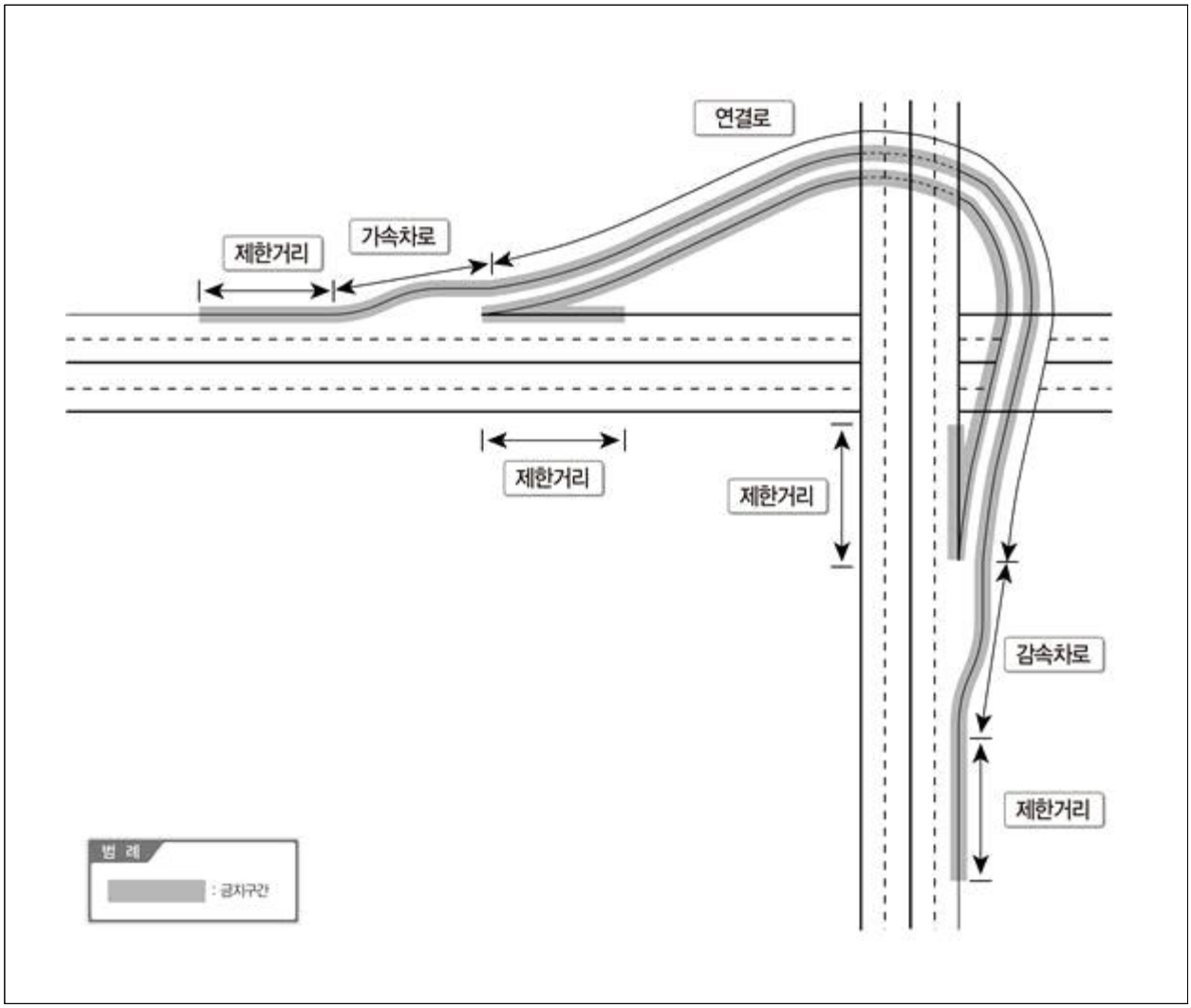
다.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라. 5가구 이하의 주택과 농어촌 소규모 시설(「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을 말한다)의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한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예시도> 입체교차로의 연결 금지구간







비고

1. 위 표 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위 표 중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2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된 도시지역을 말한다.

■[별표 5]

변속차로의 최소길이(제8조제1호 관련)

1. 지구단위계획구역,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의 경우

가. 본선에 변속차로를 설치하는 경우

(단위: 미터)

<table>
<tr><th rowspan="2">시 설</th><th rowspan="2">주차 대수 또는 가구수 등</th><th colspan="2">감속부의 길이</th><th colspan="2">가속부의 길이</th></tr>
<tr><th>감속차로</th><th>테이퍼</th><th>가속차로</th><th>테이퍼</th></tr>
<tr><td>1) 공단 진입로 등</td><td>-</td><td>40
(25)</td><td>15
(10)</td><td>65
(45)</td><td>20
(15)</td></tr>
<tr><td>2) 휴게소 및 주유소 등</td><td>-</td><td>40
(25)</td><td>15
(10)</td><td>65
(45)</td><td>20
(15)</td></tr>
<tr><td>3) 자동차정비업소 등</td><td>-</td><td>25
(15)</td><td>10
(10)</td><td colspan="2">직접식 가속차로
30(20)</td></tr>
<tr><td rowspan="2">4) 사도、농로、마을 진입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교통용 통로 등</td><td>통로 등의 폭이 6m 미만</td><td colspan="4">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7m)</td></tr>
<tr><td>통로 등의 폭이 6m 이상</td><td>15
(10)</td><td>10
(10)</td><td colspan="2">직접식 가속차로
25(20)</td></tr>
<tr><td rowspan="3">5) 판매시설 및 일반 음식점 등</td><td>20대 이하</td><td>15
(10)</td><td>10
(10)</td><td colspan="2">직접식 가속차로
25(20)</td></tr>
<tr><td>21대 이상 50대 이하</td><td>25
(15)</td><td>10
(10)</td><td colspan="2">직접식 가속차로
30(20)</td></tr>
<tr><td>51대 이상</td><td>40
(25)</td><td>15
(10)</td><td>65
(45)</td><td>20
(15)</td></tr>
<tr><td rowspan="3">6) 주차장、건설기계 주기장、운수시설、의료시설、운동시설、관람시설、집회시설 및 위락시설 등</td><td>20대 이하</td><td colspan="4">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7m)</td></tr>
<tr><td>21대 이상 50대 이하</td><td>25
(15)</td><td>10
(10)</td><td colspan="2">직접식 가속차로
30(20)</td></tr>
<tr><td>51대 이상</td><td>40
(25)</td><td>15
(10)</td><td>65
(45)</td><td>20
(15)</td></tr>
<tr><td rowspan="2">7) 공장、숙박시설、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 및 기타시설</td><td>20대 이하</td><td colspan="4">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7m)</td></tr>
<tr><td>21대 이상 50대</td><td>25</td><td>10</td><td colspan="2">직접식 가속차로</td></tr>
</table>

	이하	(15)	(10)	30(20)	
	51대 이상	40 (25)	15 (10)	65 (45)	20 (15)
8) 주택 진입로 등	5가구 이하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3m)			
	6가구 이상 20가구 이하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5m)			
	21가구 이상 100가구 이하	25 (15)	10 (10)	직접식 가속차로 30(20)	
	101가구 이상	40 (25)	15 (10)	65 (45)	20 (15)
9) 농어촌 소규모 시설(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 및 태양광 발전시설 등	-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3m)			

나. 측도에 변속차로를 설치하는 경우

(단위: 미터)

시설	주차 대수 또는 가구수	감속부의 길이		가속부의 길이	
		감속차로	테이퍼	가속차로	테이퍼
1) 가목1) 및 2)	-	10	3.5	15	5
2) 가목3)	-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7m)			
3) 가목4)	-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5m)			
4) 가목5)부터 7)까지	50대 이하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7m)			
	51대 이상	10	3.5	15	5
5) 가목8)	5가구 이하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3m)			
	6가구 이상 20가구 이하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5m)			
	21가구 이상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100가구 이하	(곡선 반지름: 7m)			
	101가구 이상	10	3.5	15	5
6) 가목9)	-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3m)			

다. 적용기준

1) "지구단위계획구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2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된 도시지역을 말한다.

3) 가목은 왕복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며, 괄호 안의 숫자는 왕복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4)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5) 가목4)의 주차 대수 또는 가구수 등란에서 "통로 등의 폭"이란 통로 등에서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부분(길어깨를 포함하고, 자전거도, 보도 등 그 밖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최소 폭을 말한다.

6) 가목5)부터 7)까지 및 나목4)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2. 그 밖의 지역의 경우

가. 본선에 변속차로를 설치하는 경우

(단위: 미터)

시 설	주차 대수 또는 가구수	감속부의 길이		가속부의 길이	
		감속차로	테이퍼	가속차로	테이퍼
1) 공단 진입로 등	-	45 (30)	15 (10)	90 (65)	30 (20)
2) 휴게소 및 주유소 등	-	45 (30)	15 (10)	90 (65)	30 (20)
3) 자동차정비업소 등	-	30 (20)	10 (10)	60 (40)	20 (20)

4) 사도、농로、마을 진입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교통용 통로 등	-	20 (15)	10 (10)	40 (30)	20 (20)
5) 판매시설 및 일반 음식점 등	10대 이하	20 (15)	10 (10)	40 (30)	20 (20)
	11대 이상 30대 이하	30 (20)	10 (10)	60 (40)	20 (20)
	31대 이상	45 (30)	15 (10)	90 (65)	30 (20)
6) 주차장、건설기계 주기장、운수시설、의료시설、운동시설、관람시설、집회시설 및 위락시설 등	30대 이하	30 (20)	10 (10)	60 (40)	20 (20)
	31대 이상	45 (30)	15 (10)	90 (65)	30 (20)
7) 공장、숙박시설、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 및 기타시설	20대 이하	20 (15)	10 (10)	40 (30)	20 (20)
	21대 이상 50대 이하	30 (20)	10 (10)	60 (40)	20 (20)
	51대 이상	45 (30)	15 (10)	90 (65)	30 (20)
8) 주택 진입로 등	5가구 이하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곡선 반지름: 3m)			
	6가구 이상 100가구 이하	30 (20)	10 (10)	60 (40)	20 (20)
	101가구 이상	45 (30)	15 (10)	90 (65)	30 (20)
9) 농어촌 소규모 시설(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 및 태양광 발전시설 등	-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곡선 반지름: 3m)			

나. 측도에 변속차로를 설치하는 경우

(단위: 미터)

<table>
<tr><th rowspan="2">시설</th><th rowspan="2">주차 대수 또는 가구수</th><th colspan="2">감속부의 길이</th><th colspan="2">가속부의 길이</th></tr>
<tr><th>감속차로</th><th>테이퍼</th><th>가속차로</th><th>테이퍼</th></tr>
<tr><td>1) 가목1) 및 2)</td><td>-</td><td>10</td><td>3.5</td><td>15</td><td>5</td></tr>
<tr><td>2) 가목3)</td><td>-</td><td colspan="4">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7m)</td></tr>
<tr><td>3) 가목4)</td><td>-</td><td colspan="4">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5m)</td></tr>
<tr><td rowspan="2">4) 가목5) 및 6)</td><td>30대 이하</td><td colspan="4">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7m)</td></tr>
<tr><td>31대 이상</td><td>10</td><td>3.5</td><td>15</td><td>5</td></tr>
<tr><td rowspan="2">5) 가목7)</td><td>50대 이하</td><td colspan="4">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7m)</td></tr>
<tr><td>51대 이상</td><td>10</td><td>3.5</td><td>15</td><td>5</td></tr>
<tr><td rowspan="3">6) 가목8)</td><td>5가구 이하</td><td colspan="4">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3m)</td></tr>
<tr><td>6가구 이상
100가구 이하</td><td colspan="4">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7m)</td></tr>
<tr><td>101가구 이상</td><td>10</td><td>3.5</td><td>15</td><td>5</td></tr>
<tr><td>7) 가목9)</td><td>-</td><td colspan="4">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3m)</td></tr>
</table>

다. 적용기준

1) 가목은 왕복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며, 괄호 안의 숫자는 왕복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2)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 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 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3) 가목5)부터 7)까지 및 나목4)·5)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1일

신청인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연락처	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신청 내용	① 연결 목적	② 점용기간
	점용장소·점용면적 (㎡)	
	공사 실시방법	공사시기 년 월 일 ~ 년 월 일
	도로 복구방법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제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연결계획서 2. 설계도면(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을 말하며,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1,000원
유의사항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도로·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작성방법	①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인 경우 10년 이내로 적고, 그 밖의 점용물인 경우 3년 이내로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현지조사	→	검 토	→	결 재	→	허가서	→	발 급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연락처	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신청 내용	① 허가번호	당초 허가기간
	② 연결 목적	
	점용장소·점용면적 (㎡)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연장 사유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제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없음	수수료: 1,000원
유의사항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작성방법	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현지조사	→	검 토	→	결 재	→	허가서	→	발 급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연락처	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신청 내용	① 허가번호	허가기간
	② 연결 목적	
	점용장소·점용면적 (㎡)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변경내용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제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변경내용 관계 도서	수수료: 1,000원
유의사항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작성방법	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현지조사	→	검 토	→	결 재	→	허가서	→	발 급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신청구간 도로시설물 현황조서

신청인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연결 개요	도로종류 및 노선명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도로의 연결지점
	사용 목적

도로 시설물 시공 현황	시공물량				미시공물량			
	시설명	단위	물량	사업비	시설명	단위	물량	사업비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현황조서에는 도로시설물의 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산출 근거자료와 시공물량 사진을 첨부할 것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규제심사 결과 : 비중요규제

제28회 김제지평선축제 10. 1.(목) - 10. 5.(월)

김 제 시

수신 건설과장
(경유)
제목 규제심사 회신(김제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건설과-25898(2026. 9. 11.)호와 관련하여 규제심사 결과, 「행정규제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비중요규제에 해당하여** 그 내용을 붙임과 같이 회신합니다.

붙임 검토의견 회신 1부. 끝.

기 획 감 사 실 장

2026. 9. 11.

주무관 최보훈 의회법무팀장 이혜라 기획감사실장 서해영

협조자

시행 기획감사실-12641 (2026. 9. 11.) 접수

우 54386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중앙로 40, 김제시청 기획감사실 (서암동) / http://www.gimje.go.kr
전화번호 063-540-3723 팩스번호 063-540-3576 / qhgns0824@korea.kr / 비공개(5)

더 특별한 내일, 기회도시 김제

1/1

행정규제 사전심사 검토의견

회신일	2026. 9. 11.

자치법규명	김제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구분	제정(○) 개정안()
소관부서	건설과	담당자 (행정전화)	양수혁 3434	기타	건설과-25898 (2026. 9. 11.)
제·개정 및 폐지 이유	○ 「도로법」 제52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는 경우의 허가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도로 구조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원활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제2조) 나. 조례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다. 연결허가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제6조) 라. 도로 포장, 변속차로, 부가차로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제9조) 마. 배수시설, 분리대, 길어깨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 제12조) 바. 부대시설, 공사의 우선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 제14조)				
검 토 의 견	○「행정규제기본법」의 “행정규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 위 개정안은 도로 및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는 경우 허가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사안으로 규제에는 해당하지만 규제의 범위를 상위법령에서 정한 사항 내에서 규정하여,「행정규제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비중요 규제에 해당함**				
규제심사 결 과	**신설(◯)**	**강화()**	**완화()**	**폐지()**	**해당하지 않음()**
작성자	기획감사실 : 서해영(3206) / 의회법무팀장: 이혜라(3213) / 담당자: 최보훈(3723)				

□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 원안 동의

제28회 김제지평선축제 10. 1.(목) - 10. 5.(월)

김 제 시

수신 건설과장
(경유)
제목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통보(2026A전북김제030)-「김제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1. 건설과-24262(2026.8.24.)호와 관련됩니다.

2. 귀 부서에서 제출한 「김제시 도로와 다른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의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검토 결과를 통보합니다.

붙임 검토의견 통보서 (2026A전북김제030) 1부. 끝.

교 육 가 족 과 장

주무관 김지은 여성가족팀장 최남 교육가족과장 전결 2026. 8. 25. 김숙영
협조자
시행 교육가족과-28627 (2026. 8. 25.) 접수 건설과-24377 (2026. 8. 25.)
우 54386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중앙로 40, (서암동) / http://www.gimje.go.kr
전화번호 063-540-6905 팩스번호 063-540-6929 / kjekje44@korea.kr / 대국민 공개
더 특별한 내일, 기회도시 김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table>
<tr><td>관리번호</td><td colspan="4">2026A전북김제030</td></tr>
<tr><td>정 책 명</td><td colspan="4">김제시 도로와 다른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td></tr>
<tr><td rowspan="3">소관부서</td><td>기관명</td><td colspan="3">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td></tr>
<tr><td>부서명</td><td colspan="3">건설과</td></tr>
<tr><td>담당자명</td><td>양수혁</td><td>전화번호</td><td>063-540-3434</td></tr>
<tr><td>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td><td colspan="4">2026년 8월 24일</td></tr>
<tr><td>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건설과)</td><td colspan="4">Ⅰ. 개 요
□ 제정 목적
-「도로법」제52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 시키는 경우의 허가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도로 구조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원활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제2조)
나. 조례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연결허가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6조)
라. 도로 포장, 변속차로, 부가차로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9조)
마. 배수시설, 분리대, 길어깨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 제12조)
바. 부대시설, 공사의 우선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 제14조)
Ⅱ. 분석평가 항목별 점검 결과
1.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조항 : 해당없음
2. 성별 구분(고정관념) 개선 필요성 및 개선안 : 해당없음
3. 성별 특성 관련 조항 : 해당없음
4. 성별 특성 반영 필요성 및 개선안 : 해당없음
5. 성별 균형 참여(위원회 등) 관련 조항 : 해당없음
6. 성별 균형 참여 필요성 및 개선안 : 해당없음
7. 성별 통계 관련 조항 : 해당없음
8. 성별 통계 개선안 : 해당없음</td></tr>
<tr><td rowspan="2">종합 검토 의견
(교육가족과)</td><td colspan="4">■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td></tr>
<tr><td colspan="4">’김제시 도로와 다른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td></tr>
<tr><td>검토의견
반영계획서</td><td colspan="4">해당 없음</td></tr>
</table>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6년 08월 25일

김제시 복지환경국장

(담당자/연락번호 : 김지은/063-540-6905)

건설과장 귀하

□ 자치법규 검토결과 : 이견 없음

결 과 보 고 서

김 제 시

문서번호 건설과-25899

제 목 『김제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입법예고 및 부서의견 조회 결과보고

『김제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입법예고 및 부서의견조회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1. 조 례 명 : 『김제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6. 8. 21. ~ 2026. 9. 10.(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의견제출 : 의견 없음
3. 부서의견조회
 가. 조회기간 : 2026. 8. 21. ~ 2026. 9. 10.(20일간)
 나. 조회대상 : 전 실과소
 다. 의견제출 : 의견 없음.

끝.

2026. 9. 11.

김 제 시 장 귀하

주무관	양수혁	건설행정팀장	박성후	건설과 과장	김희찬

□ 입법예고 결과 : 이견 없음

결 과 보 고 서

김 제 시

문서번호 건설과-25899

제 목 『김제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입법예고 및 부서의견 조회 결과보고

『김제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입법예고 및 부서의견조회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1. 조 례 명 : 『김제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6. 8. 21. ~ 2026. 9. 10.(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의견제출 : 의견 없음
3. 부서의견조회
 가. 조회기간 : 2026. 8. 21. ~ 2026. 9. 10.(20일간)
 나. 조회대상 : 전 실과소
 다. 의견제출 : 의견 없음.

끝.

2026. 9. 11.

김 제 시 장 귀하

주무관	양수혁	건설행정팀장	박성후	건설과 과장	김희찬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 원안가결

제28회 김제지평선축제 10. 1.(목) ~ 10. 5.(월)

김 제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6년 제10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알림

기획감사실-12714(2026. 9. 14.)호와 관련하여 2026년 제10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일 자 : 2026. 9. 16.(수)
2. 심의방법 : 서면심의
3. 참석위원 : 8명
4. 심의안건 : 9건(조례 6, 규칙3)
5. 의결결과 : **원안가결 9건**

연번	심의번호	소관부서	안건명	의결결과
계			총 9건 (조례 6, 규칙3)	
1	2026-43	김진수 의원(의회사무국)	김제시의회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	2026-44	김영자 의원(의회사무국)	김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3	2026-45	행정지원과	김제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원안가결
4	2026-46	행정지원과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원안가결
5	2026-47	행정지원과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원안가결
6	2026-48	세정과	김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7	2026-49	회계과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8	2026-50	경제진흥과	김제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9	2026-51	건설과	김제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붙임 2026년 제10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자료 각 1부. 끝.

김 제 시 장

수신자 김제시의회의장, 행정지원과장, 세정과장, 회계과장, 경제진흥과장, 건설과장

주무관 [redacted] 의회법무팀장 [redacted] 기획감사실장 [redacted] 2026. 9. 18.
협조자
시행 기획감사실-13105 접수
우 54386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중앙로 40, 김제시청 기획감사실 (서암동) / http://www.gimje.go.kr
전화번호 063-540-3723 팩스번호 063-540-3576 / qhgns0824@korea.kr / 비공개(5)
더 특별한 내일, 기회도시 김제

□ 관련 법령 발췌서

도로법

[시행 2026. 6. 3.]

[법률 제21172호, 2025. 12. 2.,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2.>

1.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제23조(도로관리청) ①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고속국도와 일반국도: 국토교통부장관
2.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원지방도(이하 “국가지원지방도”라 한다):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 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 관할구역에 있는 구간은 해당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3. 그 밖의 도로: 해당 도로 노선을 지정한 행정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일반국도(우회국도 및 지정국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지방도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된다.

1.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관할구역의 동(洞)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2. 특별자치시 관할구역의 동 지역에 있는 지방도: 해당 특별자치시장

3. 시 관할구역의 동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 및 지방도: 해당 시장

제52조(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연결허가”)의 기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제23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하여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도로법 시행령

[시행 2026. 6. 3.]

[대통령령 제36310호, 2026. 5. 6., 일부개정]

제49조(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법 제5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란 다음 각 호의 도로를 말한다.

1. 일반국도
2. 지방도
3. 4차로 이상으로 도로구역이 결정된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약칭 : 국토계획법)

[시행 2026. 6. 3.]

[법률 제21169호, 2025. 12. 2.,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4. 14., 2012. 12. 18., 2015. 1. 6., 2017. 4. 18., 2017. 12. 26., 2021. 1. 12., 2024. 2. 6.>

4. "도시·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

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나.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다.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라.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바. 삭제 <2024. 2. 6.>

사.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도시혁신계획

아. 복합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복합용도계획

자. 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제6조(국토의 용도 구분)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3. 5. 22., 2023. 5. 16.>

1.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전문개정 2009. 2. 6.]

제85조(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①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2017. 12. 26.>

③ 단계별 집행계획은 제1단계 집행계획과 제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되,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제1단계 집행계획에, 3년 후에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제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농어촌도로 정비법 (약칭 : 농어촌도로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타법개정]

제4조(도로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① 이 법에서 도로는 면도(面道), 이도(里道) 및 농도(農道)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로의 종류별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 14.>

1. 면도: 「도로법」 제10조제6호에 따른 군도(郡道) 및 그 상위 등급의 도로(이하 “군도 이상의 도로”라 한다)와 연결되는 읍·면 지역의 기간(基幹)도로

2. 이도: 군도 이상의 도로 및 면도와 갈라져 마을 간이나 주요 산업단지 등과 연결되는 도로

3. 농도: 경작지 등과 연결되어 농어민의 생산활동에 직접 공용되는 도로

③ 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09. 4. 1.]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타법개정]

제4조(연결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일반국도에 다른 시설을 연결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를 도로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15., 2014. 12. 29.>

② 제1항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9.>

1. 연결계획서

2. 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이하 “변속차로등”이라 한다)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한다)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연결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개요(목적, 규모, 기간 및 투자계획과 필요한 경우 교통수요 분석 등을 포함할 것)

2. 변속차로등의 설치계획

3. 부대시설의 설치계획

4. 연결공사 중의 안전관리대책 및 교통관리대책

5. 도로 연결의 목적이 되는 시설물의 법정 주차 대수(시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변속차로등의 설계도면의 작성은 별표 1 및 별표 2에서 정하는 작성요령과 설치방법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연결허가를 신청한 자가 연결허가를 받은 후 연결허가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변경내용 관계 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9., 2021. 8. 3.>

[전문개정 2010. 9. 15.]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약칭 : 도로구조규칙)

[시행 2026. 6. 3.]

[국토교통부령 제1588호, 2026. 6.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제47조의2, 제48조, 제50조, 제50조의2 및 제54조에 따라 도로를 신설 또는 개량하거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하고 고속국도 휴게시설 등에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적용되는 최소한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7. 15., 2015. 7. 22., 2020. 3. 6., 2024. 7. 10., 2026. 6. 2.>

제3조(도로의 기능별 구분 등) ① 도로는 기능에 따라 주간선도로(主幹線道路),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集散道路) 및 국지도로(局地道路)로 구분한다.

② 도로는 지역 상황에 따라 지방지역도로와 도시지역도로로 구분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도로의 기능별 구분과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의 종류의 상응 관계는 다음 표와 같다. 다만, 계획교통량, 지역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로의 종류를 다음 표에 따른 기능별 구분의 상위 기능의 도로로 할 수 있다.

도로의 기능별 구분	도로의 종류
주간선도로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보조간선도로	일반국도, 특별시도 ·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집산도로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국지도로	군도, 구도

□ 참고자료 : 김제시 필수 자치법규 미마련 현황(규제 분야)

2026년 김제시 규제혁신 추진계획

2 불합리한 행정규제 정비

1 자치법규 규제 발굴 및 정비 합동평가지표 연계

○ **(추진목표)** 상위법령 규제가 폐지·신설·강화·완화되었으나 자치법규에 반영되지 않아 주민 불편, 기업 부담을 주는 규제를 발굴·개선하여 불편·부담 해소 및 규제합리화

○ **(정비시기)** 2026. 6월 ~ 10월

○ **(정비대상)** 최근 5년간 상위법령의 제·개정 취지(규제완화·합리화)가 미반영된 자치법규, 규제 관련 필수 자치법규 미마련 2건

소관부처	법령명	해당조문	공포일	시행일	소관부서
산업통상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 (허가의 기준)	17. 10. 31.	17. 10. 31.	경제진흥과
국토교통부	도로법	제52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17. 11. 28.	18. 5. 29.	건설과

□ 참고자료 : 전북자치도 내 타 시·군 조례 제정 현황

연번	지자체	조 례 명	제정연도	비 고
1	전주시	전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2000	
2	군산시	-	-	
3	익산시	-	-	
4	정읍시	-	-	
5	남원시	남원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2003	
6	김제시	-	-	
7	완주군	완주군 군도 등과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2011	
8	진안군	진안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2008	
9	무주군	-	-	
10	장수군	장수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2005	
11	임실군	임실군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2000	
12	순창군	순창군 군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2001	
13	고창군	고창군 군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2015	
14	부안군	-	-	

□ 참고자료 : 전북자치도 내 타 시·군 조례(남원시)

남원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15. 6. 30.]

[전북특별자치도남원시조례 제1170호, 2015. 6. 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52조에 따라 제3조의 적용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려는 경우의 허가기준, 허가절차, 설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11.27, 2012.11.16, 2013.7.2.,2015.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7.2.,2015.6.30.>

1. "변속차로"란 자동차를 가속시키거나 감속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차로를 말한다.
2. "테이퍼"란 주행하는 자동차의 차로 변경을 원활하게 유도하기 위하여 차로가 분리되는 구간이나 차로가 접속되는 구간에 설치하는 삼각형 모양의 차도 부분을 말한다.
3. "부대시설"이란 주행하는 자동차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에 설치하는 방호울타리, 낙석방지시설, 사설(私設)안내표지, 노면표시 및 분리대 등을 말한다.
4. “부가차로”란 변속차로로 연결되는 사업부지 사이에 설치하는 차로를

말한다.

5. “교차로”란 세갈래교차로, 네갈래교차로, 회전교차로, 입체교차로 등 둘 이상의 도로가 교차 또는 접속되는 공간을 말한다. <신설 2013.7.2.>

6. <신설 2013.7.2.> <삭제 2015.6.30.>

7. “연결로”란 입체교차하는 도로에서 서로 교차하는 도로를 연결하거나 서로 높이 차이가 있는 도로를 연결해 주는 도로를 말한다. <신설 2013.7.2.>

8. “측도(側道)”란 자동차가 도로 주변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본선 차도에 병행하여 설치하는 도로를 말한다.

9. “교통섬”이란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처리나 보행자 도로횡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차로 또는 차도의 분기점 등에 설치하는 섬 모양의 시설을 말한다.

10. “길어깨”란 도로를 보호하고 비상시에 이용하기 위하여 차도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1. “연석(緣石)”이란 보도 등과 차도의 경계선에 연접하여 설치하는 경계석을 말한다.

[제8호부터 제11호까지 신설 2015.6.30.]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3조제2항에 따라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일반국도·지방도의 우측으로 진입 또는 진출할 수 있도록 다른 도로·통로, 그 밖의 시설(이하 "다른 시설"이라 한다)을 도로의 우측에 연결(교차에 따른 연결

을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도시계획구역 안의 도로와 동 지역 안의 도로는 적용하지 아니하되, 교통사고가 현저히 우려되는 도로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현지 여건에 맞도록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단서신설 2003.11.27, 개정 2012.11.16, 2013.7.2.,2015.6.30.>

② 제1항에 따라 연결하는 경우 외에는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연결 허가의 신청은 제4조에 따른다. <신설 2013.7.2.> <개정 2015.6.30.>

제4조(연결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시설을 연결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6., 2013.7.2., 2016.6.30.>

② 제1항에 따른 도로와 다른시설 연결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개정 2013.7.2.,2015.6.30.>

1. 연결계획서
2. 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이하 "변속차로 등"이라 한다)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한다)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 된다)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연결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7.2.>

1. 사업개요(목적, 규모, 기간 및 투자계획과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수요분

석 등을 포함한다)

2. 변속차로 등의 설치계획

3. 부대시설의 설치계획

4. 연결공사 중의 안전관리대책 및 교통관리대책

5. 도로 연결의 목적이 되는 시설물의 법정주차 대수(시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변속차로 등의 설계도면의 작성은 별표 1 및 별표 2에서 정하는 작성요령과 설치방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

⑤ 도로에 다른 시설을 연결하려면 제1항에 따른 연결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시장에게 연결을 신청하려는 도로의 구간이 제6조에 따른 연결허가 금지구간에 해당 하는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3.7.2.>

⑥ 제1항에 따른 연결 허가를 신청한 자가 연결 허가를 받은 후 연결허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 내용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의 연결허가 기간 연장신청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변경내용 관계 도서를 붙여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7.2.> <개정 2015.6.30.>

제5조(도시지역 등에서의 연결 허가기준) ① 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하 “도시지역”이라 한다)에서 도로에 다른 시설을 연결하려면 도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에 적합하도록 허가(제4조제6항에 따른 연장 허가 및 변경 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1. 해당 도로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이하 “도시·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정비되어 있는 경우

2.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일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1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

② 시장은 시공 중인 도로에 다른 시설을 연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그 연결허가구간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구간 도로시설물 현황조서(도로시설물의 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산출 근거 자료와 시공물량 사진을 붙인다)를 작성하고 설계를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6.30.]

제6조(연결허가의 금지구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의 구간은 다른 시설의 연결을 허가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제2호·제5호 및 제6호는 도시지역 안에 있는 도로로서 제5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7.2.,2015.6.30.><단서 신설 2013.7.2.>

1. 곡선반지름이 280미터(2차로 도로의 경우에는 140미터) 미만인 경우 곡

선구간의 안쪽 차로의 중심선에서 장애물까지의 거리가 별표 3에서 정하는 최소거리 이상이 되지 아니하여 시거(視距)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의 안쪽 곡선구간

2. 종단기울기가 평지는 6퍼센트, 산지는 9퍼센트를 초과하는 구간. 다만, 오르막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오르막차로의 바깥쪽 구간은 연결 허가를 할 수 있다.

3. 도로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연결하는 교차로는 별표 4에 따른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 산정기준에서 정한 영향권 이내의 구간.다만,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5가구 이하의 주택과 농어촌 소규모 시설(「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을 말한다)의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표 4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제한거리를 금지구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단서 신설 2015.6.30.>

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나.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면도 중 2차로 이상으로 설치된 면도

다. 2차로 이상이며 그 차도의 폭이 6미터 이상이 되는 도로

라. 관할 경찰서장 등 교통안전 관련 기관에 대한 의견조회 결과, 도로 연결에 따라 교통의 안전과 소통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것으로 인정되는 도로

4. 삭 제 <2015.6.30.>

5. 터널 및 지하차도 등의 시설물 중 시설물의 내부와 외부 사이의 명암 차이가 커서 장애물을 알아보기 어려워 조명시설 등을 설치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간

가. 설계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이하인 도로: 해당 시설물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구간

나. 설계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도로: 해당 시설물로부터 350미터 이내의 구간

6. 다리 등의 시설물과 근접되어 변속차로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

7. 버스정차대, 측도 등 주민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옮겨 설치할 수 없거나 옮겨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민 통행에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구간

제7조(변속차로 등의 포장 등) ① 변속차로 등은 접속되는 도로부분을 수직으로 잘라낸 부분에 그 도로의 포장과 같은 세기를 유지할 수 있는 두께 및 재료로 포장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3.7.2.,2015.6.30.>

② 변속차로 등은 노면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그 횡단기울기가 접속되는 도로와 같거나 그 도로보다 완만하게 포장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3.7.2.,2015.6.30.>

제8조(변속차로) 변속차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3.7.2.,2015.6.30.>

1. 길이는 별표 5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할 것

2. 폭은 3.25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자동차의 진입과 진출을 원활하게 유도할 수 있도록 노면표시를 할 것

4. 사업부지에 접하는 변속차로의 접속부는 곡선반지름 15미터 이상의 곡선으로 처리할 것.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곡선반지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5. 성토부 또는 절토부 등 비탈면의 기울기는 접속되는 도로와 같거나 그 도로보다 완만하게 설치할 것

제8조의2(부가차로) 부가차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3.7.2.>

1. 길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500미터 이하로 할 것

2. 폭은 3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사업부지와 부가차로의 접속부는 곡선반지름이 12미터 이상인 곡선으로 처리할 것.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곡선반지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단서 신설 2015.5.8.>

제9조(배수시설) 배수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3.7.2.,2015.6.30.>

1. 노면의 빗물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길어깨의 바깥쪽에 연석을 설치할 것

2. 기존의 배수체계에 지장이 없도록 연결할 것

3. 접속되는 도로의 배수시설이 변속차로 등의 설치로 매립될 경우에는 기존의 배수관보다 큰 규격의 배수관을 설치하여 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U형 측구(側溝) 등 배수시설이 이미 정비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같은 단면의 배수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배

수시설에 퇴적되는 토사 등을 쉽게 제거하기 위하여 20미터 이내의 일정한 간격으로 뚜껑이 있는 맨홀을 설치할 것

4. 변속차로 등으로 연결되는 시설물의 더러운 물 또는 빗물이 접속되는 도로로 흘러가지 않도록 배수시설을 별도로 설치할 것.다만, 배수시설은 격자형 철제 뚜껑이 있는 유효 폭 30센티미터 이상, 유효 깊이 60센티미터 이상의 U형 콘크리트 측구로 하여야 한다.

제10조(분리대) 분리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3.7.2.,2015.6.30.>

1. 변속차로의 진출입부를 제외한 사업부지의 앞면 등에는 자동차의 무질서한 진출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접속되는 도로의 길어깨 바깥쪽에 분리대를 설치할 것
2. 분리대는 화단, 방호울타리, 교통섬(별표 2 제3호가목 및 제4호가목에 따른 변속차로 등의 설치의 경우에 한정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인공구조물로 설치하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변속차로의 진입부에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할 것
3. 분리대는 높이 0.3미터(교통섬은 0.12미터) 이상으로 설치하되, 시거장애가 없도록 할 것
4. 분리대를 화단으로 설치할 경우 그 폭은 1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분리대 노면에 빗물 등이 고이지 않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변속차로 등의 배수시설과는 별도로 폭 0.3미터 이상의 격자형 철제 뚜껑이 있는 U형 콘크리트 측구를 설치할 것

5. 야간에 운전자가 분리대를 알아볼 수 있도록 분리대에 빛을 강하게 반사할 수 있는 반사지를 붙이거나 시선유도표지 등을 설치할 것

6. 삭제 <2013.7.2.>

7. 기존에 설치된 변속차로와 연결하여 다른 시설의 변속차로를 추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연결된 시설을 통합된 하나의 시설로 보아 그것에 적합한 연속된 분리대를 설치할 것<단서 삭제 2013.7.2.>

제11조(변속차로 등의 길어깨) 길어깨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3.7.2.,2015.6.30.>

1. 변속차로의 길어깨는 접속되는 도로의 길어깨와 같은 구조로 폭 1미터 이상으로 설치할 것. 다만, 길어깨가 보도로도 이용되는 경우에는 보도의 폭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변속차로 등의 노면이 변속차로 등으로 연결되는 시설물의 주차공간으로 잠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길어깨 바깥쪽에 연석, 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할 것

3. 변속차로의 길어깨에는 폭 2.5미터 이상의 측대를 설치할 것

4. 변속차로의 길어깨 바깥쪽에는 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할 수 있는 보호길어깨를 확보할 것

제12조(부대시설) 변속차로 등의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3.7.2.,2015.6.30.>

1. 방호울타리 또는 낙석 방지시설 등의 안전시설은 현지의 여건이나 비탈면의 지형 조건에 맞게 설치할 것

2. 변속차로 등의 노면표시는 접속되는 도로와 같은 규격으로 하고 분리대

가 설치되지 않은 부분 등에는 안전지대 표시를 할 것

제13조(공사 시행) 해당 변속차로 등을 제외하고 차량의 진출입로가 없는 경우에는 공사 시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사용 차량의 안전한 진출입을 위하여 모든 시설공사 중에서 변속차로 등의 공사를 먼저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7.2.,2015.6.30.>

부 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른도로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연결허가를 받았거나 연결허가를 신청중인 다른도로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규정에 의한다.

부칙<개정 2003. 11. 27.> 부 칙 <개정 2003. 11.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11. 16.>(남원시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부 칙 <2012. 11. 16.>(남원시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략

□ 방침결정문

'전북권 4대 도시로' 웅비하는' 김제

문서번호	건설과 - 22416
보존기간	년
결재일자	2026. 8. 4.

주무관	팀 장	과 장	국 장	부시장	시 장	결재
양석희	박성욱	김희란	전현근	이하서	정성주	
협조	의회법무팀장 이혜라		기획감사실장 서해영			

김제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정 계획(안)

도시건설국
건 설 과